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838
----------	------------

제안연월일 : 2022년 2월 14일
제안자 : 교육위원장

1. 수정이유

- 동 조례안 제8조제1항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이전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 하도록 규정한 만큼 법적 체계성 및 조문의 통일성 측면에서 안 제8조제1항의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수정함.
- 동 조례안 제11조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인근 지역 주민 등에게 학교(공사립)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토록 하는 것은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 을 ‘학교의 장’ 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학교의 장이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이전할 경우 교육감과의 협이가 아닌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나. 학교 주차장의 개방 권한을 ‘교육감 및 학교의 장’ 에서 ‘학교의 장’ 으로 제한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8조제1항 중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를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로 한다.

안 제11조 중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 을 “학교의 장” 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p>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교육감과 협의하여야</u> 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u> 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③ (원안과 같음)</p>
<p>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u>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은</u>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p>	<p>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u>학교의 장은</u>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있는 학교 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로 인한 학교 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주차장”이란 이름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에 한정한다)의 교지나 실습지 내에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주차장이 교내 보행로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지하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안전설비”란 자동차의 출입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보장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정지선 등의 설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학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이 안전하게 설치·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의 학습권이나 체육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주차장 설치 한도)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 21조의2에 따른 학교 주차장의 설치 최고한도는 200㎡당 1대로 한다.

제6조(학교 주차장 실태조사)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학교 주차장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학교별 학교 주차장의 면적, 면수 등 현황
2. 학교 주차장의 안전설비 현황
3. 학교 주차장의 개방 여부 및 시간 또는 기간

제7조(학교 주차장 관리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학교 주차장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2. 학교 주차장의 현황과 제5조에 따른 설치 한도 준수여부
3. 학교별 학교 주차장 이용자 현황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 주차장의 수요와 공급 및 안전 관리 계획
5. 그 밖에 학교 주차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학교 주차장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의 이동 동선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학교 주차장을 설치 또는 확장하거나 이전함으로써 운동장이나 통학로(「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학로를 말한

다)를 침범하거나 잠식해서는 안 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 주차장을 설치·확장 또는 이전을 승인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 여부, 학교 주차장의 현황 및 제5조에 따른 설치한도,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내용, 제9조에 따른 안전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 주차장의 안전 확보)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설치하거나 사람이 통행할 때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 주차장의 사용료 징수) 교육감은 학교 주차장의 수요 억제와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주차장(교육감이 설치한 시립 학교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금액과 기준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설주차장 사용료 징수 조례」(별표 비고 중 제7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학교 주차장”으로 본다.

제11조(학교 주차장의 개방) 학교의 장은 학교 운영 시간 이외의 시간이나 방학 등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기간에는 인근 지역 주민이나 필요한 사람에게 학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